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1. . (제 회)	

에 너 지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2.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을 세대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 포함(안 제13조의2 제2호)

- 1) 현행 에너지이용권은 세대 단위로 발급하고 있으나, 외국인 배우자 등 외국인은 세대에 속해 있지 않아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세대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에너지이용권 수급자가 에너지이용권을 발급 신청할 경우 외국인을 해당 세대의 세대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3) 현행 에너지이용권은 세대원 수에 따라 기재금액이 달라,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외국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볼 것.

제13조의2제2호를 제13조의2제3호로 한다.

제13조의4 제1항 제2호 중 “주민등록표 등본(제13조의2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한다.

제13조의4 제1항 제3호 “장애인증명서(제13조의2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를 “장애인증명서(제13조의2 제1호 가목 3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로 한다.

제13조의4 제1항 제4호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제13조의2 제1호 가목 4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 ----- ----- -----.
1. (생략) <u><신설></u>	1. (현행과 같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u>「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외국인</u> 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으로 볼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 마. (생략)	3.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① -----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1. (생략)
2. 주민등록표 등본(제13조의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장애인증명서(제13조의2제1 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임신한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5. (생략)	<u>한다)</u>
②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5253